

의안 번호	2130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8. 25.(금) 박경흠 의원 외 4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8. 25.(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9. 5.(화)

2. 제안설명 요지(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흠)

가. 제안이유

- 의정자문단 위원의 임기를 명확·구체화하고, 회의 개최 규정을 보충하며,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자문단 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자문단 위원 임기 명확·구체화(안 제4조)
- 의정자문단 회의 관련 개최 규정 보충(안 제7조)
-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 명시(안 제8조)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주)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임기를 명확·구체화함으로써 중구의회 의정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정자문단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규정을 보충하고,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자문단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